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31 선고 2015가합42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종중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변론 종결 2016. 7. 13.

판결 선고 2016.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광주시 S 임야 22,017㎡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10. 1. 접수제918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D종중은 원고들에게 광주시 S 임야 22,01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등기소 2015. 10. 1. 접수 제81726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및 주문 제2항

이 유

1. 기초사실

가. T 20세손 U, V, W과 22세손 X은 1919. 7. 25. 광주시 S 임야 22,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Y종중(이하 'Y종중'이라고 한다)은 T 17세손 Z를 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U, V, AA 및 X 4인(이하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가, U가 1942년에 사망하고, V은 1927년에 사망하였으며, W은 1920년에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가 등기되지 않던 중 1969. 6. 2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유권이전을 사유로 하여 Y종중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라. 사정명의인 X의 손자인 AB이 1971. 6. 3. Y종중의 대표로서 위 임야대장등본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고, 이후 1971. 8. 12. 임야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사정명의인 X은 1971. 8. 26. 사망하였다.

마.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1) AC은 사정명의인 U의 손자이고, AD은 사정명의인 V의 증손녀인데, AC 및 AD은 2012. 12. 17. Y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합24039)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사건'이라고한다), 위 법원은 2013. 10. 22. 원고(AC 및 AD)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AC 및 AD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3나72475), 관련사건의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AC 및 AD이 회원으로 있는 피고 D종중(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인 단체이다. 당시 명칭은 Y종중과 동일한 AE종중이었고, 관련사건에서는 Y종중(유사단체)라는 당사자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또한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음에 따라 자신들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하여 AC 및 AD, Y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3602).

3)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5. 3. 20.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당시 Y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Y종중을 상대로 AC 및 AD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피고 D종중 또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단체로서의 실질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D종중의 AC및 AD, Y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피고 D종중가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AC 및 AD은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피고 D종중이 당시 Y종중과 명칭이 동일한 것을 이용하여 그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등기소 2015. 10. 1. 접수 제81726호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인을 자신으로 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이후 피고 D종중은 피고 D종중 이외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2015. 10. 29. 접수 제918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한다)를 마쳐주었다.

아. 한편 사정명의인 U가 위와 같이 1942년에 사망함에 따라 AF이 사정명의인 U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AF과 AF의 장남 AG이 사망함에 따라 AG의 아들들인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AF 지분 중 일부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종중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D종중은 당시 Y와는 전혀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Y종중과 명칭이 동일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변경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가등기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변경등기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같은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역시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등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원고들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를 근거로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이나, 이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 보인다).

4. 피고 D종중 이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련사건에서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후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터잡아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가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제1 주장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원래 명의인은 Y종중이 아니고, 피고 D종중(당시 Y종중과 동일한 명칭이었던 AE종중)이다.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 또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Y종중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 개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 D종중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소유자이기도 하여 피고 D종중의 구성원 모두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등기의 유용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2) 제2 주장

이 사건 임야는 피고 D종중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은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판결이다.

3) 제3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계산하면 전체 지분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나머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의 판단을 뒤집어 피고

D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피고 D종중라는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제1, 2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호, 판사 손승우, 판사 방혜미